2017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 ○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道 지역개발기금 저금리로의 차환을 위해 2017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사전 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 ○ 지방채 차환 발행 : 19,496백만원

4. 참고사항
 가. 2017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: 붙임과 같음
 나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- 붙임

5. 검토내용
 ○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기존 농협 은행에서 금리 3.79%로 발행된 지방채를 상환하고, 금리 2.0%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 발행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에 따라 지방채 차환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.
 ○ 검토결과 저금리로의 지방채 차환을 통해 금리가 3.79%에서 2.0% 대로 낮아지면 20억 6,900만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, 지방채를 거치기간 없이 5년 균등 상환을 통해 지방 채무 상환기간을 당초 2024년 상환에서 2021년으로 3년을 단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지방채 발행 동의를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201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

고금리 금융 지방채를 道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 발행함으로써 상환기간 단축 및 금리인하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함.

1. 근거법령
 ○ 지방재정법 제11조

2. 지방채 상환 현황
 ○ 차 입 처 : 농협 (이율 연 3.79%)
 ○ 당초발행액 : 24,370백만원
 ○ 상환기간 : 2013년 ~ 2024년(1년거치 10년 균등상환)
 ○ 기상환액 : 4,874백만원
 ○ 미상환액 : 19,496백만원

[연도별 상환계획]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계	22,635	3,153	3,060	2,968	2,876	2,783	2,691	2,598	2,506
원 금	19,496	2,437	2,437	2,437	2,437	2,437	2,437	2,437	2,437
이 자	3,139	716	623	531	439	346	254	161	69

3. 2017년도 지방채 발행개요

○ 발 행 액 : 19,496백만원

○ 발행사유 : 지방채 차환

○ 차 입 처 : 경상북도 (지역개발기금, 이율 연 2.0%)

○ 상환기간 : 2017~ 2021년(5년 균등상환)

4. 차환 상환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계	20,566	4,269	4,191	4,113	4,035	3,958
원 금	19,496	3,899	3,899	3,899	3,899	3,900
이 자	1,070	370	292	214	136	58

5. 기대효과

- 저금리 및 상환기간의 단축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기대됨.